

한솔제지주식회사 정 관

제정 2015년 1월 2일
개정 2017년 1월 25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한솔제지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ansol Paper Co., Ltd.로 기술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2. 펄프류의 제조, 판매
3. 조림, 양묘 및 산림개발
4. 원목 및 종묘의 생산, 판매
5. 지류, 제지기계부속용품, 펄프, 고지, 원목 및 종묘의 수출입업
6. 부동산 임대업
7. 창고업
8. 엔지니어링 사업
9. 환경사업(수질오염·대기오염·소음·진동 방지시설업, 폐기물 관련사업)
10. 전기 통신업
11. 컨설팅 및 교육·훈련 서비스업
12. 기계설비공사업
13. 산업설비공사업
14. 해외건설업
15.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도·소매업, 서비스업
16. 유통업
17. 화학물질 도매업
18. 전기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3 조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또는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solpaper.co.kr)에 게재한다. 단, 전산 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및 사채

제 5 조 (수권자본 및 주식의 액면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칠천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발행할 종류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제 7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이하 본조에서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 우선 상환주식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1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한다.
-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라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우선 배당하며,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의해 상환하는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1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상환시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하는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본조 제 3 항 제 1 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 3 항 제 1 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2. 주주는 1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 등으로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상환가액은 본조 제 3 항 제 3 호를 준용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2)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이하 본조에서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2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2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익배당률, 참가적인지 여부 또는 누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7 조의 2 제 2 항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할 수 있는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 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전환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3.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2. 전환 청구 시 본조 제 3 항 제 1호 및 제 2 호를 준용한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제 7 조의 3 제 3 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제 7 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3)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이하 본조에서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3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② 3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익배당률, 참가적인지 여부 또는 누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 7 조의 2 제 2 항을 준용한다.
- ③ 3종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 7 조의 2 제 3 항 또는 제 4 항을 준용한다.
- ④ 3종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 7 조의 3 제 3 항 또는 제 4 항을 준용한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제 7 조의 3 제 3 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제 7 조의 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4)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이하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 ② 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기준으로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연 1%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③ 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므로 정할 수 있다.
- ④ 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4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⑦ 본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로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전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제46조 제3항의 중간배당 포함)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야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오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이천억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공모발행의 경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일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일천억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공모발행의 경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 18 조 (소집 및 통지)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④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의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 28 조(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사외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의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최소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 35 조 (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2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②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의사록)

-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이사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40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41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2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년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6 조 (이익의 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 ④ 배당금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⑤ 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회사에 귀속된다.
- ⑥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본 정관은 2017. 1. 25. 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합병(이하 '본건 합병' 이라 한다)의 등기일부부터 시행한다. 단, 제 30조의 개정내용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2, 제17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3. (합병시 발행하는 우선주식)

본 회사가 본건 합병 시 발행하는 4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비누적식,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연 1%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4. (세칙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5. (육영, 문화사업)

본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문화사업 및 육영사업을 할 수 있다.

6.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본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본 회사 설립시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는 2014년 11월 28일자 분할 전 한솔제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그 임기는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

8. (이사의 보수에 관한 특례)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2014년 11월 28일자 분할전 한솔제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2019년 3월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비동
한솔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훈